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500003]

[www.dgdt.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년 07월 25일] [songwan550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09월 27일]

@daum.net]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정 보 공 개 서

[대관령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6 . .

[대관령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변동 43-9)]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42-526-550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42-526-550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상담부서 080-5252-7751]

< 목 차 >

- I. 인사말
- I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V.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I.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IX.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인사말

< 정직한 재료와 맛, 차별화된 맛의 창조 >

정직한 재료와 차별화된 맛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취향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대관령푸드 대표 송완식입니다.

“먹거리가 바로 서야 그 나라의 문화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대중적인 요리이자, 서민들의 밥상과 술상을 넉넉하게 만드는 동태찌개!

옛날 어머니가 정성으로 끓인 동태찌개 한 냄비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으로 끓여 주시던 동태찌개를 기억하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과 정성으로 차린 밥상의 맛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는 가맹사업본부 대표인 제가 15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노하우와 검증된 맛을 기본으로, 단골고객의 입소문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된 탄탄한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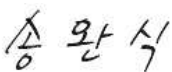
지금도 끊임없이 신메뉴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철저한 가맹점 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공장을 본사에 두어 수시로 대표인 제가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기본은 맛입니다.

또한,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도 잘 된다는 WIN - WIN 전략을 기본으로 정기점검 외에도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의 가족이 된 이상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만의 비법인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와 체계화된 매뉴얼로 누구라도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최상의 맛과 서비스,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대관령푸드 대표 

I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 관령 푸드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08.5.10	송완식	042- 526-5505	042- 526-5507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314-20-31303	

※ 당사는 2006년 1월 18일에 본점 운영을 시작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확장되면서 본점 옆에 사업장을 내어(2008년 5월 10일) 현재,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배우자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이은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년 1월 ~ 현재		송완식	042-526-5505	042-526-5507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 칭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싱싱한 동태를 비법 육수로 끓여 푸짐한 양푼이에 담아내는 특색 있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점
상 호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OO점	
상표(서비스표)	 대관령 동태찌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134345호
광 고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69,121	349,600	19,521	329,691	-106,846	-69,732
2022년	410,367	391,458	18,908	288,913	-66,698	-58,424
2023년	268,536	257,377	11,159	250,388	-66,301	-72,061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완식	대표	2008.5.10 ~ 현재	대관령푸드 대표	회사 업무 총괄
	이은숙	이사	2004 ~ 현재	대관령 양푼이동태찌개 변동점 대표	점포 운영
			2006.1.18 ~ 현재	대관령푸드 이사	회사 업무 총괄

※ 당사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므로 “이사”라는 표현 내용은 개인사업자로서 당사 자체에서 예우상 부르는 명칭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2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 외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쌈꾼	가맹사업 경영	2013.05 ~ 2020. 09.15 *운영 어려움으로 폐업하여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쌈꾼 (등록번호:2013021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2005.9.1 출원 2006.6.19 등록	출원 제 41-2005-0020208	송완식	2026.7.3
			등록 제 41-0134345호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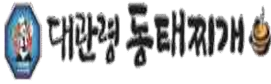
Ⅲ. 가맹본부의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사업 현황

1.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를 시작한 날 : 2006년 1월 18일

2.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관령동태찌개	대관령동태찌개	이은숙	2006.1.18~2008.5.9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
대관령양푼이 동태찌개	대관령양푼이 동태찌개	송완식	2008.5.10~2017.3.27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
대관령푸드		송완식	2017.3.28 ~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110

3.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동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 인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9	19	-	16	16	-	14	14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3	3	-	3	3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	-	-
전북	7	7	-	4	4	-	4	4	-
전남	-	-	-	-	-	-	-	-	-
경북	3	3	-	3	3	-	2	2	-
경남	2	2	-	2	2	-	2	2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19	1	-	1	-	19
2022년	19	0	-	3	-	16
2023년	16	0	-	2	-	14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www.dgdt.co.kr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홈페이지] 또는 042-542-7751로 전화주시면 전자우편으로 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6.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본부		쌈꾼	20130210	한식
		가맹점수/직영점수 (단위 : 개)		
		2018.12.31	2019.12.31	2020.12.31
		1/0	1/0	09월. 15일 경영난으로 폐업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사업자 한 명이 2022년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4	214,447	3,490	378,912	9,262	110,486	1,980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해당없음						
경기	3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해당없음						
전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해당없음						
경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대관령동태찌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대관령동태찌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4	5,044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

9. 가맹지역본부(지사,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년]에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쌈꾼]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34]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국민은행 도마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64	042-535-9413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서비스 - SOHO센터 - 가맹금예치 - 가맹본부 조회"를 클릭한 다음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IV.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원/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000	계약 체결시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시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3,300,000	계약 체결시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시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오픈 준비비	2,200,000	계약 체결시	오픈준비 전	· 오픈 준비 전 : 전액 반환 · 오픈 준비 후 :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원/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000	계약체결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등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 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 일천사백만원(₩14,000,000)(VAT 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합계	14,000,000
가맹비	5,500,000(VAT 포함)
교육비	3,300,000(VAT 포함)
오픈준비비	2,200,00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VAT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원/VAT포함/99㎡ (구 3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3.3㎡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69,697,200				-
인테리어	(협력업체)	49,500,000	1,650,000	대관령푸드 인테리어팀 계약 내용에 따름	공사 전 계약 취소	-
주방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16,500,000		시운전 완료 후	미 공급 시	-
POS	(협력업체)	1,980,000		POS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름	미 설치 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초 도 물 품	육수 찜양념 만두소 등 가맹본부	1,817,200		초도상품 입고 전	미 공급 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평(3.3㎡)당 금 이십이만원정 (₩ 220,000원)(VAT 포함)을 추후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가맹희망자의 자본에 맞춰 점포개발을 진행 적합한 점포라고 판단시 입지로 선정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닐 것	-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용모 단정하고 성실 근면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판촉 별로 분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판촉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소멸성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10만원 (VAT별도)	매월 말일	반환불가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 기일을 위반한 다음 날 부터 지급기일까지		
점포 환경 개선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7]쪽 VIII-1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계약이행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부정기적	
표준화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시장조사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방법에 대한 지도		
판촉	신규고객 창출 및 제품의 판매 촉진활동 지도		
문제분석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3,300,000(VAT포함)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는

		신규 가맹계약 기준에 준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VAT없음)	또한, 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함. (만일 양수인이 오픈 행사를 요구 할 경우 오픈준비비 2,200,000(VAT포함)원을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함.)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최초 신규 가맹계약 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초 신규 가맹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 신규 가맹계약 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I.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해당사항 없음 -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계					

- 2) 당사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계						

3.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	--------

동태찌개,조기찌개 굴동태찌개 낙지동태찌개 오징어찌개,부대찌개 동태해물전골 동태찜,낙지동태찜 동태포전,동태만두 낙지볶음,명태조림 고니사리,알사리 오징어사리,라면사리 햄사리,떡사리,갈치 조림,고등어조림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 및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본 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있어야 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2월 기준, 단위 : 원)

판매상품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판매상품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동태찌개	10,000	공문	동태찜(中)	35,000	공문
낙지동태찌개	15,000		동태찜(大)	40,000	
굴동태찌개	15,000		낙지동태찜(中)	45,000	
부대찌개	12,000		낙지동태찜(大)	50,000	
동태포전	13,000		동태해물전골(中)	45,000	
동태만두	8,000		동태해물전골(大)	55,000	
낙지사리, 고니사리 햄사리	5,000		낙지볶음	14,000	
라면사리 두부사리	2,000		명태조림(小)	35,000	
알사리	6,000		명태조림(中)	45,000	
			명태조림(大)	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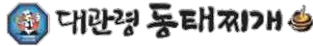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일반인에게 동태요리를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객관적자료 제시)→ 가맹점사업자의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호객행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 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자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대관령양푼이동태짜개]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전동의 없이 별도 확장공사 등 인테리어 설비를 확장하고 가맹본부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거나 해태 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의 교육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 기준 및 영업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는 제품을 제공한 경우	2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가맹본부가 메뉴를 변경 또는 새로 출시한 메뉴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21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2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공급 상품을 자점매입하거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상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의 필수공급상품 및 필수공급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의 상품 품질기준 검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3조 1항,2항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설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상을 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교육한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조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리하고, 양념등의 양이 현저히 미달하여 가맹본부의 고유맛과는 다른 상태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25조 1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위생교육, 건강진단(보건증), 영업신고증, 소방설비,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12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개설 후에도 가맹본부의 점포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재교육을 지시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7조 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4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42조 2항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42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오픈행사를 요구 할 경우 오픈 준비비를 별도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관리팀 (042-526-5505~6)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동태요리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영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관리팀 (042-526-5505~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	주 5일, 월 27일 이상 개점.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휴업 할 수 없음.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	문의 : 관리팀 (042-526-5505~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주방 2명, 홀2명(40평 기준)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 광고	100%	없음		
개별 광고	지역 단위광고, 개별광고	없음	100%		
판촉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 (36조 3항)

Ⅶ.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99㎡(구 30평)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가맹문의/ 상담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즉시	없음
점포임대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1~2주	점포 임대비용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승인 - 가맹계약서 제공	1일	없음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가맹비 5,500,000 교육비 3,300,000 오픈준비비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VAT 없음)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30일	인테리어 39,600,000 주방집기 등 16,500,000 POS 1,980,000 간판 4,400,000 초도상품 2,817,200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공사시 진행)	4일	
오픈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오픈	1일	없음

주의)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개발은 미보유시인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시 실시합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 [12]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국민)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장비교체비용
가맹본부 부담 비율이율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이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가맹본부 부담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관리팀 (042-526-5505~6)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IX.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POS 사용, 서비스, 입금 등	합숙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수시교육	음식가공 서비스등	집단강의 실습교육	당사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필수교육

특별 교육	음식가공 서비스등	집단강의 실습교육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자율 교육
재 교육 (부진점)	음식가공 서비스 등	강의 실습교육	가맹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달 될 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4시간 (5일: 4박 5일 합숙포함)	3,300,000 (VAT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8시간	무료	필수교육
특별 교육	2시간	실비	자율교육
재 교육 (부진점)	8시간	실비	필수교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수시교육,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계약해지 및 재계약시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	...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가맹금예치 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희망자용

<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